

CONTENTS

1. 한국법학원 · 기초법학연석회의 p.2

“실정법 너머 법이념 꿰뚫는 법률가 되려면 기초법학 지식은 필수”...기초법학 위기에 법조법학계 머리 맞댔다

2. 사법정책연구원 p.5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기간, “과도하면 오히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 저해할 수 있어”

3. 한국상사법학회 p.8

‘ESG 열풍’...다양한 법률문제와 회사법적 과제의 검토

4. 연세대 법학연구원 p.10

100년 전 자연법 기초 다진 연세법학...법 지평 뒤흔들 분야별 대과제들로 또 다른 100년을 논하다

5. 대법원 판례 p.13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外

6. 헌법재판소 판례 p.14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안경사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7. 해외법뉴스 p.15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미래에 온실가스 감축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총체적인 자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 학술뉴스 p.17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 무조건적 철방망이 되란 요구는 아동 입장 아냐”

기사 1

한국법학원·기초법학연석회의

“실정법 너머 법이념 꿰뚫는 법률가 되려면 기초법학 지식 필수”

기초법학 위기에 법조·법학계 머리 맞댔다

한국법학원과 기초법학연석회의(한국법사학회, 한국법사회학회, 한국법철학회),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7월 7일,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토론회- 법학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중요성과 한국 기초법학의 현황”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 출범 이후 새로운 체제에서 기초법학 교육과 연구가 큰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는 공감대 아래, 법조·법학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기초법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은 개회사에서 “법철학, 법사상사, 법제사, 법사회학 등 법학에서의 기초학문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소송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세부 분야의 법학에 그 이념과 가치, 지향, 방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며 “기초법학에 대한 지식 없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고, 어떠한 분야이건 기초적 지식 없이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좋은 법률가는 높은 수준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무능력도 가져야겠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통찰력과 윤리적 책임감 역시 갖추어야 한다”며 “이는 기초법학의 도움 없이 다룰 수 없는 경지”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축사에서 “기초법학에 대한 이해와 탐구는 실정법 너머의 법이념을 꿰뚫는 통찰력을 갖춘 법률가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장이자 아주대 법전문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법조실무와 기초법학”이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고,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법사학회 부회장)

가 “법사를 잇은 법학도에게 미래는 없다”를, 한국법철학회 기초법학 진흥 TF의 양선숙 교수(경북대, 한국법철학회 부회장)·오민용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가 “기초법학 교육- 연구 현황과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대안”을 주제발표했다. 이 세션에서는 로스쿨 교수(기초법 전공자 제외/ 응답자 153명) 및 기초법 연구자(응답자 74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마지막 세션인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대안 모색’에 참여한 토론자는 김인재 교수(인하대,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상수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박광서 판사(수원고등법원), 나희석 검사(법무연수원),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한국법철학회 이사), 장원경 교수(이화여대, 한국법사학회 이사), 박지윤 교수(이화여대 연구교수), 정일영 박사(서울시립대 강사), 최호동 변호사(한국법사학회 총무간사) 등이다.

■ 김영란 전 대법관, “판사의 주관성 통제하려면 법공동체의 끊임없는 분석·비판 필요”

김 전 대법관은 “200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그동안 해석법학에만 머물러 있던 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수없이 마주해야 했다”고 회고하며, “사유방식 자체를 늘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는 법률실무가를 양성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의 석사학위논문의 주제이기도 한 테오도르 피백의 문제중심적 사유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피백의 문제중심적 사유는 체계사유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으로서 주어진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전제를 찾아내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담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토포스(지도적인 관점)를 찾아내 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그것이 법적 판단일 경우 “무엇이 그때 그때 정당한 것인가”를 토포스의 발견과 법적 결정 획득의 순서로 하게 된다. 김 전 대법관은 “판사가 사건을 접하면서 그 사건에 맞는 법률을 찾아내어 포섭하고, 법이 흠결되어 있거나 해석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토포스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은 판사로서 늘 하는 일이지만, 위와 같은 피백의 방법론은 법이 흠결되어 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판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빛을 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학위논문의 주제를 정해주신 심현섭 교수님께서, 제가 판사생활을 해나가면서 만나게 될 난제의 해결에 대한 사유방식을 공부하라는 과제로서 이 주제를 주셨다는 걸 오랜 시간이 지나 판사생활을 마치고 나서야 깨우쳤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초대재판관 알비 삭스의 말, “광범위한 법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일반대중이 판결문의 추론방식과 일관성을 정례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판사의 주관성이 통제될 수 있다”를 인용하면서, “이때의 법공동체에는 법조계뿐 아니라 법조인처럼 사고하거나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고, 따라서 기초학문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분석과 비판은 법률실무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지적이 된다”고 했다. 판사들은 이를 계기로 좀 더 정치하고 훌륭한 판결들을 하기 위해 분발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법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의 진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분석·비판의 구체적 모습에 대하여 김 전 대법관은 “극단적인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를 오가는 대법관이 있다면 그런 태도는 올바른 것인지, 진보-보수 그룹별로 또는 그 그룹에 참여하는 개개인별로 컨시스턴시가 부족한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들은 없는지 등의 문제를 학문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이 학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로스쿨 교육, 고기잡는 방법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정병호 교수는 판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의 비중이 압도적인 현 변호사시험 출제 경향부터 비판했다. 특히 선택형 시험의 판례암기 위주 출제에 대해,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오답시비를 막을 수 있는 등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무엇이 정당하고 부당한지,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에 대해 부단히 질문을 해야 하는 법학에는 적합하지 않은 평가방식”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판례 암기로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능력을 함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로스쿨에서 법이론을 제대로 교육받아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변호사들이라면, 장래 그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법리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판례를 변경시켜 줄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면서 “판례를 포함한 현재의 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려면, 실정법의 도그마틱뿐만 아니라 법철학적, 법사적, 법사회학적 소양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로스쿨 교육은 실정법이라는 드넓은 호수의 모든 고기를 잡아주려는 시도가 아니라, 고기잡는 방법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이러한 고기잡는 방법의 한 예로써 ‘로마법과의 대화’를 제안하며, “현대법과 같은 법적 추론을 위한 논변형식을 갖춘 로마법은 우리 민법의 궁극의 뿌리이며, 우리 교과서 기술 방식과 주석서 전통도 로마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천년이 넘는 시간적 간극을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논쟁의 연속성을 갖는 대표적 사례들로는 ‘채권 자치체 책임의 법적 성질, 계약금계약과 대물변제가 요물계약인지 여부, 금전의 점유자가 곧 소유자라는 통설, 점유 상호침탈의 경우 점유물회수청구권의 존부,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가부, 소수지분권자에 의해 공유토지 점유로부터 배제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점유회복방법,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의 민사책임’ 등을 거론했다.

■ “로스쿨에 기초법학 교과목은 아예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오민용 선임연구원은 로스쿨 교수 153명과 기초법 연구자 74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학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대해 로스쿨 교수 90.2%, 기초법 연구자 93.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법전문원에서 기초법 강의를 수강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

하여는, 로스쿨 교수 집단에서 “1학년”의 답변이 가장 높았고(49.7%), 기초법 연구자 집단에서는 “모든 학년 가능”의 답변이 가장 높았다(47.3%).

“법전문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기초법 강의는 몇 학점을 수강하면 좋다고 보는지”에 대하여는, 로스쿨 교수 집단과 기초법 연구자 집단 모두 “2과목(6학점)”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로스쿨 교수 집단이 60.1%를 차지한 데 비해 기초법 연구자 집단에서는 “2과목”이 40.5%에 그치고 “3과목” 답변(36.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기초법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로스쿨 교수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교육과정상 필수과목으로 지정”이다. 필수이수학점으로 할 경우 “전통적 기초법학인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등 기초법학 군”의 방식으로 할 것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순위는 기초법 연구자 집단에서도 동일했다.

현재 법전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초법학 교육의 문제점으로, 로스쿨 교수 70명은 “교육의 변호사시험으로의 종속”을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는 “필수과목화, 과목의 다양화, P/F, 학점수 확대”(36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20명), “학부 교육의 강화”(14명) 등이 나왔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기초법 연구자 46명도 “교육의 변호사시험으로의 종속”을 꼽았는데, 그 대안으로는 “교육과정의 필수화, 졸업요건화”(18명) 외에도 “기초법학의 변호사시험과목화”(17명)가 선택됐다.

양선숙 교수는 기초법학 교육의 의의에 대해 “학부에서는 법의 이념, 법치주의, 법과 정의, 법적 권리와 의무 개념 등 시민 기본소양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로스쿨에서는 법을 원리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시대정신에 부합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량을 증진하여 법이해를 고도화시킨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현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양 교수의 말인데, “로스쿨 미של립대학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법학 커리큘럼이 약화되면서 공무원 시험과목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기초법학 교육이 함께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로스쿨 설립 대학에서는 기초법학 교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기초법학 교육과 연구를 진흥시킬 방안으로는 “학부 공통 (선택적) 필수과목 지정, 표준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 로스쿨 진학생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기초법학 전담교원 확충, 유관 국책기관에서 기초법학 연구원 채용, 기초법학 연구자들의 연구 플랫폼 설립” 등을 주장했다.

■ “학부에서 기초법 이수 여부, 로스쿨 입시자격으로 해야”

토론자로 나선 김인재 교수는 “학부에서 기초법학을 강화하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안이지만 노력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기초법학 지식을 갖췄는가를 간접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녹아들도록 문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상수 부협회장은 학부 과정에서 기초법학을 수강하게 하고 그것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시행 13년인 로스쿨은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을 했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개혁해 나갈 시기”라고 말했다. 박광서 판사는 “현행 로스쿨 커리큘럼은 기존 법과대학, 사법시험, 연수원 수료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지식을 3년 안에 습득하기 위해 학생들이 2배속으로 판례만 암기하며 보내는 것”이라고 혹평하며 필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희석 검사는 학부에서 기초법학을 일정 학점 이상 수강한 자들에게만 로스쿨 입시자격을 부여하는 안과, 로스쿨 입시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pre-lawschool’ 과정에서 기초법 과목을 수강하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심우민 교수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의 측면에서 기초법학의 중요성’과 ‘기초법 연구자들의 진로와 생계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한편, 법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법학 교육뿐 아니라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법교육 차원의 기초법학 교육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원경 교수는 “학생들이 실정법 안에 사고를 가두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정법을 법이념과 법원리에 맞게 끌어올리거나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면서 “그 역할을 할 기초법학 교육을 진흥시키려면 변호사시험이 개선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지윤 교수는 “기초법학은 법학의 형식화 또는 화석화를 저지할 수 있는 법의 지혜의 정수”라며 “기초법학뿐 아니라 법학 자체의 쇠퇴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 번시제도 개선을 통해 타개가 가능하고, 현재 기초법 연구자들이 겪는 막막함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전했다. 정일영 박사는 실정법과 기초법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기초법 지식이 어디에나 녹아들어 있는 미국의 경우를 전하며, “미국의 명판결에는 분야를 불문하고 법사적, 법사회학적, 법철학적 지식들이 크게 녹아있다”며 “이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동 변호사는 로스쿨 수료보다는 로스쿨 입시에 기초법 과목 이수를 연계시키는 안에 찬성하면서 “지금처럼 머리 좋고 성적 좋은 학생들이라면 일단 로스쿨을 진로로 생각하고 진입하게 하는 것보다는, 법조인이 되려는 진정성과 소양을 1차적으로 판별하는 수단으로써 기초법학 이수 여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 2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기간, “과도하면 오히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 저해할 수 있어”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이 지난 6월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와 함께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2년에는 법관 임용을 위해 필요한 법조재직연수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2026년부터는 다시 10년으로 상향될 예정임에 따라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이는 주최측의 설명이다.

홍기태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와 같은 법조재직연수의 변화는 법관 임용제도뿐 아니라 법관 인사제도, 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서 큰 폭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규법관 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춘 법조경력자의 지원을 유도하고, 적합한 지원자를 법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성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제도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 도입에 이견 없던 법조일원화...도입 후 법원은 법관 임용에 ‘빨간불’

“법관 임용제도 평가와 적정 법조경력”을 발제한 김신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뛰어난 실무능력과 훌륭한 성품을 겸비하고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까지 갖춘 풍부한 경륜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함으로써, 더 좋은 재판과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위한 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종전의 법관 즉시임용제도는 일회적인 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회 경험이 없고 나이도 젊은 판사들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사법시험제도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에는 많은 이견이 있었어도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에는 거의 이견이 없었던 것은, “판사 임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김 판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이후 법원은 법관 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개정 법원조직법이 시행된 2013년을 전후하여 법관 임용현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49명~175명의 법관이 임용되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2017년(161명)과 2020년(155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39명~111명의 법관만이 임용됐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잘 정착된 미국의 경우 연방지방법원 부판사(Magistrate Judge) 공석 1개에 통상 50명 내지 70명 정도의 지원자가 몰리는 점과, 영국의 경우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실시된 법원 및 심판소의 개별선발절차에서 979명의 상근 및 비상근 법관, 비법조인 사법보직자 선발에 8,148명의 지원자가 있던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그 어려움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김 판사는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직 지원율이 낮은 현상과 관련하여, 법조경력이 길어질수록 법관직 지원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내용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회원 변호사 전원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회귀분석해 보니, 법조경력이 길수록 법관직 지원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든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했다.

이어 신임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년이 가장 바람직한 법조경력기간”이라고 응답했음을 언급하며,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기간은 국민들이 실력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관들로부터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안전장치가 너무 과도하여 오히려 좋은 재판이라는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법원은 항상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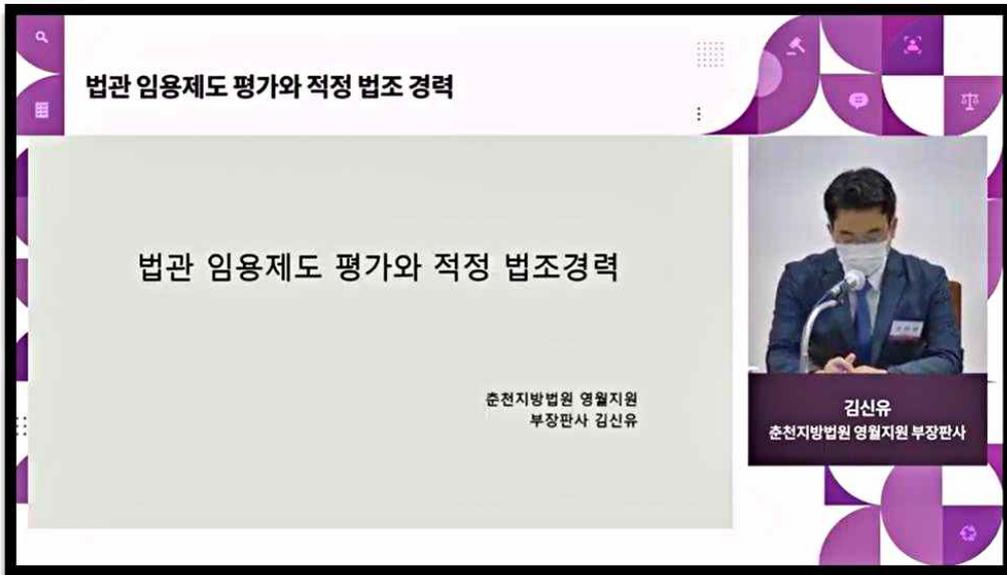
■ 법관 임용에 역할극 등 활용...‘각국 법관 임용제도 현황’

김 판사가 소개한 주요 국가의 법관 임용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①법관 선발에 객관적으로 점수화한 시험 형식의 전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②그러한 인식의 근거에는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법관 지원자에 대한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회 전반의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점 ③법관직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율을 유지할 수 있고, 임용 지원 또는 탈락을 이유로 기존 소속 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 ④법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과 균형을 중시하는 점 ⑤법관 지원자들을 평가함에 있어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점 ⑥그와 같은 독립적인 위원회가 법관 지원자들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평가 기간도 충분히 부여되는 점 ⑦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실시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시험 준비 부담이 없으므로 임용 기간이 장기화되어도 지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점 등이 특징이다.

영국의 법관 임용제도는 능력을 중심으로 하되 성품을 고려하면서 다

양성까지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①60~70명의 상근 직원을 보유한 독립 조직인 법관인사위원회로 하여금 법관 임용절차를 주관하게 함으로써 법관 선발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한 점 ②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상급 법관을 선발할 때에는 자기평가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지원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 ③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전화면접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는 점 ④인사 및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비법관 면접 패널로 선정하는 점 ⑤역할극 등 다양한 방식의 면접을 실시하는 점 ⑥법관의 다양성 확보 정책을 명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⑦법관직 지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정책을 시행하는 점 등이 주목된다.



사법시험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면접 단계 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표하여 지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일단 면접 단계에 접어들면 그와 같은 성적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면접 결과만으로 선발하여 유능성 지표에 대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또한 사법시험 성적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변호사 경력 등을 거치면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경력을 쌓거나, 전문분야 학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유의미한 참고사항이 되며, 특히 전문법원 법관을 선발할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특별법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면접절차를 마련해 두고, 전문분야의 법조경력 내지 학위 보유자 위주로 전문 법원 법관을 임용하고 있어 시사점을 준다.

일본의 변호사 중에서 재판관을 임용하는 임관절차에서는, 변호사 임관 추천위원회와 하급재판소 재판관 지명 자문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변호사위원과 시민위원으로 구성되어 각 지역 변호사회마다 설치되는 변호사 임관 추천위원회는, 변호사 임관절차의 초기 단

계부터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임관희망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최고재판소에 제공한다.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및 그 하부 조직인 지역위원회는, 임관후보자에 관한 세부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후보자의 재판관 지명 적부에 관한 의견을 최고재판소에 회신하고 있다.

김 판사는 특히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주요 국가 중에는 1심 재판을 담당할 다수의 법관을 동시에 선발함에 있어 우리와 같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이나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물며, 법관의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최초 임용 연령을 앞당김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재직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한편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

경력기간의 단축을 통한 젊은 법조인의 법관 임용 확대를 법원 조직의 다양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고, 법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임용 시 요구하는 법조경력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법관 전문성 ‘양성’하던 법원, 희소한 전문법조인 공급받는 ‘수요자’로 변화

윤찬영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은 “2011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법조일원화 방식 법관 임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성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는 곧 법원이 법조인력시장의 수요자로서 희소한 자원인 전문법조인을 충분히 공급받는 문제”라고 해석했다. 종래 법관즉시임용제 아래서는 법원이 재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제식 교육 및 법관연수에 기초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10년 이상 재직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선임연구위원은 “법조일원화 방식의 법관선발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맞물려 법관구성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법관이나 재판의 전문화를 언급할 때의 전문화는 사건의 유형(case-type)에 의해 정의되는 기능적인 전문화(functional specialization)를 의미하는데, 이는 대상사건을 그 내용상 특성(attribute)에 따라 일정한 분야로 나누는 것으로서 통상 사건 내용에 따른 전문화(subject-matter specialization)”라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제도로서의 전문법관을 말할 때에는 위와 같이 설정된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05년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시행을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공정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선발 안내’에서 ‘가사소년사건을 비교적 장기간 전담하게 될 전문법관’을 선발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나,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을 논하면서 가사소년전문법관과 유사한 ‘약 5년 정도의 도산업무’를 담당할 도산전문법관제도를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 법관 전문화의 전제조건은?

법관 전문화로 인한 일반적인 장점으로는 양질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해지며, 재판의 통일성이 높아져 예측가능성이 개선된다는 점이 거론된다. 반면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법관과 변호사가 소규모 그룹을 형성함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내지 공정성의 외관이 훼손될 우려, 관할의 광역화로 인한 사법접근권 약화, 관견효과(管見效果, tunnel vision) 등에 기인하는 재판의 질적 저하, 전문법원 등 전문법관 활용모델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점으로 지목된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법조일원화 시대의 전문법관 확보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이들 전문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지원할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원자의 전문성의 정도와 보수는 비례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 법관 임용에 관한 재정적 유인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면, 민사·상사·형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들의 법관임용신청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은 영국의 예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인력시장에 대해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법관의 질적 하락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법관의 능력 저하뿐 아니라 다양성 저하 등 여러 함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로 개정 법원조직법이 정한 10년이 적절한지를 묻는 선행연구의 설문조사에서, 2020년 신규임용 법관 중 83%가 매우 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답변하면서 그 이유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들은 각자의 직역에서 자리를 잡았으므로 법관으로 전직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를 87%나 선택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자신의 직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에 법관임용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재직연수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법관 전문화의 전제조건’으로, 직무별 법관선발과 동일법원 장기근무 및 전문분야 근무 보장을 들었다. 그는 “법조일원화 임용제도 아래에서의 법관 전문화는 근본적으로 법관선발구조 변경, 즉 집단적 선발제도를 직무별, 직군별 선발로 변경하여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전문성 있는 지원자가 법관 임용을 신청하여 임용되더라도 해당 전문분야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법관 임용신청을 고려하는 후보군에게 ‘근무조건’에 관하여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하고, 향후 전문성 있는 법조경력자의 임용신청이 감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성 있는 법관 확보를 통한 재판의 전문성 향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사 3

한국상사법학회

‘ESG 열풍’...다양한 법률문제와 회사법적 과제의 검토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권종호)가 지난 7월 2일, 한국법학교수회,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함께 “ESG 경영과 상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ESG 경영과 우리 회사법의 대응”을 기조발제했고, 정준혁 서울대 법전문 교수는 “ESG와 회사법의 과제”를 발표했다.

■ ESG 경영,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의 진화 과정에서 부각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 조합으로, 2006년에 제정된 UN 책임투자원칙(PRI)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UN 책임투자원칙(PRI)을 따르겠다고 서명한 기관은 ESG 이슈를 반영해 투자분석과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 투자자가 되며, 투자 대상기업에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최완진 교수는 “ESG는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실천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고 쓰느냐와 관련된 영역에 해당된다”고 했다.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고객, 정부 등이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ESG 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ESG는 1970년대 이후 촉발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개념의 진화과정에서 부각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통적 금융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속가능금융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2010년대 초반 들어 사회적 금융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논의가 전개됐고, 최근에는 기후·환경변화의 중요성과 함께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며 ESG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 교수는 특히 “코로나19로 금융, 경제, 환경이 취약해진 시점에서 기후리스크가 더해질 경우 화석연료 기반산업의 자

산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ESG 경영의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기후변화대응’이라며 “탈탄소 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글로벌 우수 기업들은 자발적 탄소저감활동 및 저탄소 기술투자 등 탄소 net-zero를 목표로 한 ESG 산업혁신을 견인 중”이라고 말했다.

■ ESG 경영 위해 보완되어야 할 회사법 규정들

금융위기 이후 우리 나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를 20여 년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주주 중심주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최완진 교수의 평가다. 그는 “공정경제3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주주권리를 확보하려는 일련의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나 결코 완결된 것은 아니”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ESG 경영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법의 몇 가지 규정에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ESG 요소를 고려하여 이사회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기업에 대한 이사회 업무수행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때, 그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상법 제400조의2로 ‘경영판단의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또한 △법정의 감사기관인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내부감독기관(이사회) 간의 관계설정 및 역할 분담의 문제, 그리고 법정 감사기관과 내부통제기구 간의 관계설정 및 역할 분담 문제를 상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중대재해법 도입, 환경법규 강화 등에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등도 강조했다.

■ ‘ESG 열풍’에 맞서 ‘ESG 회의론’도...

‘ESG 열풍’이 전지구적으로 불고 있지만, 한편에선 ‘ESG 회의론’도 등장했다. 착한 기업인데 돈을 못버는 이른바 ‘ESG 딜레마 현상’을 지적한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불을 지핀 것은 프랑스 최대 식품기업 ‘다논’(Danone)이라는 게 최완진 교수의 말이다.

‘다논’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친환경 방침을 세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추구를 강조하는 등 ESG 경영의 교본으로 불리던 회사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사이 주가가 20% 넘게 하락하고 지난해 매출이 7% 가량 줄어드는 등 실적 부진이 이어졌고, 지난 3월 다논의 주요 주주인 행동주의펀드들은 7년 간 회사를 이끌어 온 최고경영자(에마누엘 파베르)를 쫓아냈다.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를 놓고 “CEO가 사명을 강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는데는 너무 적은 시간을 쓴 탓”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ESG 평가기준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대체로 ESG 등급이 높지만, 등급이 낮은 제조·서비스 분야 기업들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지속가능투자 부문 CIO(최고 투자책임자)였던 타릭 팬시는 “ESG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유기업, 패스트 패션 기업을 편입하는 일이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수익에도 좋다는 것은 희망적인 기대”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 교수는 “주요 대기업의 ESG 경영성과는 평가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국내외 권위있는 평가기관조차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을 뚜렷이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 기업들이 ESG 경영평가 지표로 주로 활용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물론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레피니티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도 대외비라는 이유로 언론이나 경제단체 등 외부에 평가모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영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K-ESG 지표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반길 일이라는 게 최 교수의 말이다. 그는 “기존 국내외 주요 지표와의 높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ESG 평가 대응능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ESG 회의론 등을 볼 때, 경영이 기업 본래의 이

윤창출 목적을 지나치게 억누름으로써 기업의 진정한 존재이유와 기업가치를 왜곡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하는 한편 “ESG 경영의 확대는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경영의 목적이 이해관계자 중심의 가치 제고로 전환되면서 그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기업의 존립 목적은 기업경영을 통해 단순히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가치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우리 기업 특성 생각할 때 이사회중심모델은 또 다른 문제 야기할 가능성 있어”

정준혁 교수는 “외국의 회사법 학계에서도 ESG 관련 논의가 매우 활발하여 유명 회사법 교수들이나 경영학, 재무학 교수들이 발간하는 논문 중 상당수가 ESG와 관련이 있고, ESG를 주제로 하는 많은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ESG 논의는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이해관계자주의 이론이나 회사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관련 논의, 책임 있는 자본주의(accountable capitalism), 지속가능한 금융(sustainable finance), 자본주의 대전환(reimagining capitalism), 목적이 주도하는 회사(purpose driven corporation), 파이코노믹스(Pieconomics) 등, 다양한 명칭 하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주주우선주의(shareholder primacy)나 재무성과 중심의 단기이익추구(short-termism)에 대한 비판의 수준도 유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ESG 논의는 회사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전통적인 논의에서부터, 현행 회사법제 하에서 ESG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구할 것인지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문제 등 회사법에 수많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과제들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반하지는 않는지, 주주단기주의에 대해 회사법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ESG 공시나 평가 제도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수익을 희생하면서 ESG 요소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와 같은 문제들이 포함되는데, 회사법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ESG 경영이 정당화되는 이유로 정 교수는 크게 네 가지를 들었다. ①기업의 영향력이 유례 없이 커지고 기업 활동이 개인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점 ②갈수록 기술이 고도화되

고 기업의 사업 내용이 매우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가 법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규제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 단위로 수립된 현재의 규제 체계가 여러 나라에 걸쳐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점 ③사안에 따라서는 정부보다 기업이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 점 ④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은 유용하다는 점 등이다.

한편 “어떠한 방법으로 ESG를 추구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상정 가능한 회사법의 모델은 네 가지”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사들이 주주의 단기이익 추구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사회에 많은 재량을 주어서 이사회가 ESG를 주도하는 모델(이사회 중심 모델) ▲주주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ESG를 주도하는 모델(주주 중심 모델) ▲환경, 사회적 목표를 회사의 목적으로 정하고 경영진이 실행의 수탁자처럼 회사의 목적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게 하는 이른바 수탁자 모델(trustee model)(목적 주도 모델) ▲주주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표자 모델(representative model)(이해관계자 경영 참여 모델)이 그것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가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고, 특히 지배주주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으며(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 지배주주의 각종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소액주주 이익 침해 문제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주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이사회에 많은 재량을 주는 방식은 소액주주 보호 등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사내이사 보수 체계를 ESG 성과와 연동시키는 등의 노력과 함께, 소액주주에 의한 주주제안이나 의결권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연기금이 여러 상장회사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ESG 요소를 고려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ESG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도 덧붙였다.

기사 4

연 세 대 법 학 연구 원

100년 전 자연법 기초 다진 연세법학,
법 지평 뒤흔들 분야별 대과제들로 또 다른 100년을 논하다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박동진 교수)이 지난 6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연세법학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세법학, 또 다른 백 년- 진리·자유와 법학”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법 분야를 망라하여 총 10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전지연 백주년기념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되는 주제들은 모두 우리 법의 지평을 뒤흔들 거대 담론들로서, 연세법학이 앞으로의 100년에 지향할 분야별 대과제이자 연세법학의 또 다른 100년을 알림과 같다”고 소개했다.

■ “기존 실무이론 교정하며 객관적 타당성 강화해 나갈 때 법학이란 학문이 존재”

김상용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독교법률가의 덕목으로서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법실증주의 악법의 시대상황에서 한국인의 고통을 덜고, 법실증주의와는 다른 인간적인 자연법에 의한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선각자들이 기독교 사랑에 기초한 법의 구축을 위하여 법학교육을 시작한 것이 연희전문대학 법학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에는 남다른 뜻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연세법학의 시작은 먼훗날 반드시 도래할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자연법의 초석을 놓았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 법학교육이념은 성서에 기초한 ‘정의와 사랑의 법학’이었다”고 전하면서, “기독교법률가의 덕목이자 그들이 추구해야 할 법의 이상도 정의와 사랑이어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법의 세계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연세대 법전문원 교수는 “법학도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기존의 실무와 이론을 교정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서 바른 법해석을 찾아 끊임없이 객관적 타당성을 강화해 나갈 때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 취지를 담아 “사실확정을 전제하는 형법이론과 사실미확정을 전제하는 형사절차의 조화”를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공갈죄 사례를 통해 형법이론의 의미 확인을, 교사미수 사례를 통해 형법이론을 잘못 이해하여 빚어진 입법의 오류 확인을, 이론과 판례의 방법론적 시각이 드러나는 오상방위 사례를 통해서도 형사소송의 목적과 법 적용의 특성 확인을 살펴보면, “형법이론은 실정형법의 의미와 구조를 밝혀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형법적용과 형사입법에 국가기관의 자의가 개입되는 것을 막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체계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률해석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통제하는 비판적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순일 연세대 석좌교수는 “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미완의 과제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전하면서,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그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헌법 규정들에 대한 헌법해석론을 통해 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건립과 재건 등의 역사적 배경을 아우르며 법

치주의의 개념과 그 실천적 의미를 도출한바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로 천명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공화주의·국민주권·법치주의를 토대로 한 자주독립국가를 의미하고, 민주공화국은 곧 자유국가·법치국가·민주국가를 지향하는 정치공동체”라고 정의했다.

■ “회사제도 지배하던 주주지상주의 부작용 교정되어야”

함재학 연세대 법전문원 교수는 “국민주권과 대의제도: 이상인가 환상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국민주권이란 개념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의 토론과 심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국민주권과 대의제도는 픽션과 팩트 사이 혹은 상징과 실재 사이의 간극과 긴장을 적절히 유지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함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 주권의지는 대의제도를 통해서만 형성되고 확인되는 것이며, 국민주권과 대의제도는 일각의 주장처럼 상호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런 오해는 여러 나라에서 목격되는 포퓰리즘 정권의 포퓰리스트들이, 대의기관과 제도권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등에 업고 주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주장으로 득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손창완 연세대 법전문원 교수는 “주식회사 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회사 제도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공과를 살펴보고 미래를 논했다. 그는 “회사는 근대 최고의 발명이라고 말할 만큼 인류 문명의 진보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지만, 회사와 회사제도의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회사의 목적이 이윤추구인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회사제도의 목적은 공익의 증진에 있으며, 따라서 회사제도를 지배하던 주주지상주의에 의한 부작용은 교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주주지상주의를 대체하는 팀생산이론에 입각한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제시하며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는 회사를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ESG도 확산된 주주가치에 근거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에 근거를 둘 때 이론적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기 연세대 법전문원 교수는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국제법원의 등장이 국제중재에 미치는 함의”를 발표했다. 그는 “당사자 자치원칙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국제중재는 각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판정하는 판정부 구성에 직접 참여하므로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는 장점

이 있어 오늘날 국제분쟁해결에서 선호되는 분쟁해결 방식”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전세계 주요 경제국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창설된 국제상사법원과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양자간 투자법원이나 다자간 투자법원의 사례와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과 판정부를 통한 중재의 경계가 점점 무의미해지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김 교수는 “국제법원은 계속 진화일로에 있지만, 당사자 자치를 보다 존중하면서 융통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는 판정부를 통한 중재가 가까운 미래에 분쟁해결영역의 대세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제법원을 통한 국제소송과 국제중재가 상호 경쟁관계가 아니라, 공동으로 양성하면 상당한 비교우위를 누리는 신종 사법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빅테크 등 거대 플랫폼 기업 대응- 부러지지 않는 여러 개 화살처럼 종합적 대처 절실”

오병철 연세대 법전문 교수는 “제3의 재산권으로서 데이터권의 체계적 정립”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데이터를 둘러싼 법리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법적 규율 대상인 데이터에 대한 근원적 고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데이터들의 법적 성질이 매우 상이하고, 이미 서로 다른 법률과 법리가 정교하게 확립된 분야와 공백 상태에 놓인 영역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라는 단일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고찰하려 했기 때문에 어려움과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그는 데이터를 ‘추출적 데이터’와 ‘창조적 데이터’로 유형화하고, 전자는 가역적인지 여부, 후자는 전통적 지식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게 하여 데이터의 귀속을 권리관계로 다루되, 그 실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서의 데이터권’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데이터권의 수립을 통해 지금까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데이터 일반에 대한 권리화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데이터 유통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형두 연세대 법전문 교수는 “플랫폼과 법- 절전(折箭)의 교훈”이라는 주제 아래 빅테크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를 살펴봤다. 그는 “빅테크 법적 규제 논의에 대한 접근은 대체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첫째가 “기술발전과 혁신을 전적으로 밀어주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나누자는 일종의 ‘선성장 후분배’ 방식”이며 둘째가 “성장과 경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특히 빅테크가 인간의 삶을 진정 풍요롭게 하는 것인가에 관한 본질적 질문 및 한 사회나 국가를 넘어 인류 전체와 미래 세대를 고려할 때 빅테크가 통제하는 세상을 수용할 태세가 되었는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지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남 교수는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경쟁법, 조세법, 노동법, 절차법 등 광범위한 법률문제의 중심에 빅테크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있음에도 개별 정부 기관이나 학자들은 각기 부처와 전문분야 별로 나뉘어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화살은 하나씩은 잘 부러져도 한 묶음일 때는 쉽게 부러지지 않으니, 종합적 접근과 대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빅테크에 대한 사후 규제의 한 방편으로 논의되는 데이터세에 대하여는 기본소득 재원 문제와 연계하여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성수 연세대 법전문 교수는 “Mayer vs. Vosskuhle- 행정법학의 통일장 이론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그는 전통적인 Mayer의 행정법학 방법론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현한 신사조행정법학을 살펴보면, 양자간 방식과 내용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보관계 혹은 그 이상의 통합적 구축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찰했다. 그는 “행정법학의 통일장 이론은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결론내면서, “행정법학의 이론과 실제에서 현재의 상황을 최적으로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전적 행정법학 방법론과 신사조행정법학을 적절하게 통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 등 행정과 정부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이전의 조직과 절차, 정보와 재원의 활용 등 부분에 있어서는 신사조행정법학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와 방법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일단 행정과 정부가 일정한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그것이 법령과 헌법,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사법부 중심의 해석론에 매몰되는 것을 벗어나 입법을 통해 다시 행정법규의 조율, 협치, 절차, 정보 등의 흐름이 재편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연세법학, 또 다른 백 년 - 진리·자유와 법학

대법원 판례

■ 2018도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6월 30일,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은 피고인 회사 존속 중에 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했고, 이 사건 약식명령 이전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지만 약식명령 청구 당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는 선례를 인용하며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 32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2021다217011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이 6월 30일,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

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 실시제품은 지형 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실시제품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로, 가상의 골프코스상에 볼이 놓인 지형조건을 감지하고, 센싱장치에 의해 매트조건을 감지한 다음, 페어웨이 매트 영역에서 타격을 할 경우 감지된 지형조건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고, 트러블 매트 영역에서 타격을 할 경우(다만 지형조건보다 불리한 매트 영역이나 이종의 트러블 매트 영역에서는 타격이 불가능하다) 지형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문언상 지형 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서도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를 특정한 비거리 조정 방법으로 정의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

원심은 “피고 실시제품에는 지형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을 매트 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보정치로 보정하여 비거리 감소율을 연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산출된 볼의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 2018도18010 횡령 (가) 파기환송-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토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건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6월 30일,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인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 피해자들을 위해 토지들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 등기는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피고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했다. 원심은 위의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수용보상금 중 피해자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

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

람이 그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했다라도, 보상금에 대한 점유 취득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보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판례

■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6월 24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 보안관찰법에 따라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정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조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4(위헌):2(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국가기밀 탐지·수집)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형을 선고받고 2016. 7. 17. 형집행을 종료한 자다. 청구인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여, 출소 후 출소사실 및 기존에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주거지 변동 사실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위반죄로 기소됐다.

심판대상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데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

부에서 의견이 갈렸는데,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위헌의견은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과 유사한 신고의무 및 그 위반 시 동일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위배되고,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의 헌법불합치의견은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대상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형사처벌의 부담이 있는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나,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대상자에 대하여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부과함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러한 의무가 즉시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의 합헌의견은 “간첩, 내란·이적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안관찰해당범죄는 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재범 억제가 특별히 중요하고,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관리·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로부터 변동신고조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해야 한다”며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장기간의 계획 수립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바, 변동사항 신고의무기간에 일률적인 상한을 두어서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고, 변동신고의무 이행의 강제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국가의 안전 등으로 매우 중대한바, 이에 따른 대상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4(합헌):5(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안경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A주식회사와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당해사건의 피고인이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들이다. 제청신청인들은 2011. 8. 27. A회사에 고용된 안경사인 乙과 그의 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하되 A회사가 실제 영업을 책임지고, 안경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A회사와 점포 명의자가 절반씩 분배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명동2호점을 개점한 이래, 같은 방법으로 2015. 3. 5.까지 안경업소 총 9개를 개설했다. 제청신청인들은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제청신청인 甲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제청신청인 A회사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정의견(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미선의 합헌의견)은 △안경업소 개설 자체를 그 업무를 담당할 자연인 안경사로 한정하여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요청된다는 점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자로 하여금 안경 조제·판매를 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과잉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된 안경사의 책임감이나 윤리성 등이 감소하며, 안경 조제·판매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사후적 단속·구제로는 국민보건상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안경사들이 법인의 형태로 안경시장을 장악하면 자본력이 약한 개인 안경업소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안경사와 안경소비자 간 인적·지속적 신뢰관계 형성이 어렵게 된다는 점 △현

행 의료기사법과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더라도 안경사들은 협동조합, 가맹점 가입, 동업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과 같은 조직화, 대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의 헌법불합치의견은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들, 예를 들어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폐해나 무면허자에 의한 안경 조제·판매와 같은 우려는, 안경업소의 개설 주체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기 보다는 안경의 조제·판매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안경사의 의사결정권한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문제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해외법 뉴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미래에 온실가스 감축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총체적인 자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출처: 헌법재판연구원〉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이시(異時)적 자유의 보장”으로서 기본권은, 미래에 온실가스 감축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총체적인 자유의 위협으로부터 청구인을 보호한다”는 설시를 통해 연방 기후보호법(이하 ‘기후보호법’) 조항에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총 4개의 병합된 헌법소원 (2021. 3. 24. 사건번호 1 BvR 2656/18,

1 BvR 96/20, 1 BvR 78/20, 1 BvR 288/20)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기후보호법 조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기후보호법 제1조 제1문에 따르면, 기후보호법은 기후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에 갖는다. 그 근거는 2016. 11. 4. 발효된 파리협약(bereinkommen von Paris)이며, 또 다른 근거는 독일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장기 목표인 ‘2050년까지 온실가스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기후보호법에 따라 독일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밑으로 유지하고 가능한 한 산업화 이전의 수준인 1.5도 이하로 통제해야 한다. 기후보호법 제3

조 제1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최소 55%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고, 기후보호법 제4조 제1항 제3문과 연계한 부칙 2에서는 2030년까지 허용되는 분야별 연간 배출량의 감축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기후보호법은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기후보호법 제4조 제6항은 "2030년 이후의 기간 동안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을 2025년에 연방정부가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을 통해 확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가가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4조제1항 제3문과 연계한 부칙 2를 통해 당장의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한 충분한 규정(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 수준 내지 최소한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지구 기온 상승을 통제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그 근거로 "섭씨 1.5도 이상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수백만 명의 인명이 위험에 처하며, 기후체계의 임계점을 초과함으로써 예상 불가한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기후보호법에 규정된 탄소 배출량의 감축을 통해서 섭씨 1.5도라는 기온 제한에 상응하는 '잔여 탄소예산(CO2-Restbudget)'을 준수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2030년 이후의 배출량 감축 의무로 인한 미래의 부담에 대해서 '모든 생활영역의 완전한 정지(Vollbremsung)'라고 명명하며 공통적으로 자유권의 침해를 호소했다.

청구인들 중 방글라데시와 네팔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기본권상 보호의무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및 제14조 제1항("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에서 찾았으며, 기본

법 제2조 제1항("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과 연계한 기본법 제20a조("국가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헌법적 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및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연계한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1문("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으로부터 '인간다운 미래를 가질 기본권(Grundrecht auf menschenwürdige Zukunft)'과 '생태계에서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Grundrecht auf das ökologische Existenzminimum)'가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환경단체들에게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환경단체들은 '자연의 변호인(Anwälte der Natur)'으로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7조에 비추어 기본법 제19조 제3항과 연계한 동법 제2조 제1항 및 제20a조의 침해를 주장했다. 이들은 "입법자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해야 하는 유럽연합법상 기속력 있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청구적격은 기본법과 헌법소송법에서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자유, 점점 더 강하게 헌법상 요구되는 제한에 직면할 것"

현재는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과 제4조 제1항 제3문과 연계한 부칙 2는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2031년 이후의 배출량 감소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한 기본권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입법자는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2031년부터의 지속적인

감축목표를 사유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 기존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과 제4조 제1항 제3문과 연계한 부칙 2는 계속 적용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현재는 생명과 신체의 온전성에 대한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과, 재산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포함하는 제14조 제1항의 보호의무가 위배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가가 기후중립 목표를 따르지 않는 경우나 국가의 보호의무를 적응대책을 통해서만 이행하려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입법자에게 부여되는 형성의 여지를 감안할 때 본 사안은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과 제4조 제1항 제3문과 연계한 부칙 2에 따라 2030년까지 허용된 배출량은, 2030년 이후에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통해 보호되는 자유를 위협하므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현재는 미래에 온실가스 감축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총체적인 자유의 위협으로부터 청구인을 보호하는 '이시(異時)적 자유의 보장(intertemporale Freiheitssicherung)'으로서의 기본권을 언급하며, "입법자는 기후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유권의 보호를 보장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실시했다.

현재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허용하는 조항들은 미래의 자유에 대한 불가역적인 법적 위협이 되는데, 오늘날 허용되는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본법 제20a조에 부합하는 잔여 배출가능성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라면서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점점 더 강하게 헌법상 요구되는 제한에 직면하게 되고,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사실상 언제든지 자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입법자의 형성여지를 감안하면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과 제4조 제1항 제3문과 연계한 부칙 2가 기본법 제20a조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기후보호명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지만,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과 제4조 제1항 제3문과 연계한 부칙 2가) 기본법 제20a조에 따라 기본

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비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기후중립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을 시간적으로 골고루 배분해야 하는 요청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입법자는 헌법적으로 필수적인 앞으로의 감축기준을 2030년 이후 및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정도로 적시에 확정해야 하는 한편, 연간 감축

량과 감축기준을 세분화하여 확정함으로써 충분히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후보호법 제4조 제6항 제1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그레프를 불충분하게 규정한 점 및 기후보호법 제4조 제6항은 아직까지 기본법 제80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학술 뉴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 무조건적 철방망이 되란 요구는 아동 입장 최우선에 둔 것 아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가 지난 6월 21일, "양형연구회 제6차 심포지엄-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을 개최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최근 중대한 아동학대범죄가 이어지면서 그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다시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양형위원회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을 주는 양형연구회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로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을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제1세션에서는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이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을 발제하고, 이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최준혁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수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가 참

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박현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허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 이세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양분되어 있는 아동학대 규율법...아동복지 차원과 보호자의 범죄 제재 차원

아동학대를 다루는 현행법은 2가지가 있는데, 「아동복지법」은 아동 복지 차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정의하며, 각 법이 규율하는 범위는 차이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율하는 경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내리는 아동학대여부 판단에 따른 대응으로서,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비해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폭넓게 규정하며, 사법기관의 아동학대범죄 판단과 별개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규율하며, 형법 및 아

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부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아동학대범죄'로 간주하고 있다(제2조제4호).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성인에 의한 학대행위라도 그가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박은정 과장은 "이처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아동학대(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행정부에 의한 「아동복지법」상의 대응과 사법부에 의한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대응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아동학대 문제 개입에 법원과의 협력체계가 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를 소개하며 "미국은 아동학대사건을 위한 '소년법원(Juvenile Court)'을 운영하면서, 학대행위 종식과 아동의 원가정복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개입수단을 강구하는 등 아동학대의 대응에서 사법부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보호에 관한 사안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는 영국과, 아동의 격리 및 가정복귀가 아동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호주의 사례 역시 아동학대 문제에 관해

사법부의 개입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 **“아동학대범죄만이 지니는 특수성... 그만큼 강력한 통제 필요하다는 의미”**

박은정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범죄가 갖는 다양한 특성을 양형인자에 반영하여 다른 범죄에 비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이 반영된 양형기준을 제시하고자 지난 2020년 8월,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TF’를 출범했다.

아동학대범죄는 가해자가 주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면서, 피해자는 방어능력 및 의사표현능력이 낮은 아동이고, 발생장소 역시 주로 가정으로서 사건이 은폐되기 쉽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박 과장은 “이러한 특수성은 곧 아동이 보호자와 가정에서 생활하는 한 언제든지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항시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쉽지만 발견되기는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해당 범죄유형을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TF’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양형기준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및 법률 전문가, 아동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 끝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고, 2021년 1월 21일 이를 양형위원회에 직접 전달했다.

제안된 내용은 △‘아동학대범죄군’의 신

설 요청 △아동학대에 관련된 특정 가중요소가 모든 아동학대범죄에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요청(특히 보호자의 학대는 보다 엄중하게 대응)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요청 △‘통상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으로도 해결



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 등이다.

■ **“양형기준, 형벌과 책임 간 비례도 생각해야...피해아동의 관점이 가장 중요”**

김세중 판사는 “양형위원회는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및 양형기준 시행 후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수정해 왔다”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시행에 따른 양형실무의 현황을 점검하고, 신설범죄인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안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발제 취지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를 양형기준에 포섭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김 판사는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체계상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그 근거로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에서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각 기본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범죄와 결합하여 ‘살인의 고의로 살해한 경우’는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섭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원칙에는 형벌의 목적인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의 달성’뿐 아니라 ‘형벌과 책임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 원칙의 준수’도 요구되지만, 모든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국민들로서는 ‘일반예방, 응보, 사회방위 등의 목적 달성’의 측면에서 양형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가해자인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부모인 경우 그 관계가 형사처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아동의 관점에서 재범의 방지, 가해 부모와의 관계 회복, 정서적 치유 등 특별 예방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법관들 아동학대 양형기준 준수율 특히 높다”...독립적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도

박현주 검사는 양형기준 시행 후 아동학대범죄 양형의 성과와 관련하여 법관의 선고형이 제4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포함된 체포 등 범죄군에서의 준수율은 93.5%에 달하는데, (법원에서) 다른 범죄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양형기준을 준수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학대 처벌법위반 제1심(고단, 고합) 사건 616건 중 검사의 구형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징역형인 사건 총 386건에 대한 선고 결과를 분석하면서, “아동학대치사의 평균 구형은 130개월인 반면 평균 선고형량은 75.3월, 아동학대중상해의 평균 구형은 89.6월, 선고 평균형량은 44.8월, 시설중사자아동학대의 평균 구형은 20.4월, 선고 평균형량은 10.2월에 달하여, 아동학대치사는 구형 대비 선고가 57.9%, 아동학대중상해는 50%, 시설중사자아동학대는 50.2% 정도”라고 전했다.

박 검사는 현행과 같이 아동학대 양형기준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①아동학대 사건은 형법상 체포죄 등 사건과 달리 아동보호사건 송치, 조건부 기소유에 처분 등 여러 처분이 가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건 중 기소 되는 경우는 보다 중한 사건들로서 체포죄 등과 양형기준을 달리 볼 필요성이 있는 점 ②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어 아동학대범죄 군을 구분할 실익이 있고, 아동학대살해

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다수를 이룰 것으로 이는 입증에 있어 아동학대치사와 구분이 쉽지 않아 공통의 양형인자를 갖는 점 ③취학 전 아동이 보호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공분이 집중되고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뿐 만 아니라 법원의 양형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점 ④현재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에서 지배적인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서 체포·감금죄와 함께 규정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언급했다.

■ “가해자 엄중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범죄예방과 아동의 보호”

토론자로 참여한 최준혁 교수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의 대응은 예방보다 학대조사와 사후치료에 집중됐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발견되어 신고되기 전에는 아동이 아무런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대가 발견된 후에는 이미 아동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원가족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다”는 의견을 밝히며 “현재 법조문이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높은 법정형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사후적 방법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개입과 분리, 치료가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과 아동의 보호”라고 주장하며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대다수의 아동학대는 경제적 빈곤, 정신적 문제, 학대의 대물림으로, 아동보호는 보호시설, 관계기관의 업무 등으로 연결되며, 결국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거시적이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니 가해자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복잡다단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아울러 “이제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이며,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관에 대한 인력증원, 아동보호시설 확충과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용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일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공백을 지적하며, “예컨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피해아동(남, 5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죄와 상해죄를 인정했는데(대구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2912 판결), 폭행죄 및 상해죄에 대해서는 본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폭력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는 권고형이나 가중 또는 감경인자 등에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범죄로서의 폭행죄 및 상해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폭행죄 또는 상해죄와 동일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이 정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세원 교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양형은 ‘숨방망이’로 비유되고 있으나, 다른 범죄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철방망이’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부모 자녀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폭력범죄 양형인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아동학대범죄에서도 가중요소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로서 ‘보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을 언급했고, 초범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관련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신고접수된 기록까지 감안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 한국법학원 회비 납부 안내

| 연회비 | 연회비 납부방법 | 유료회원 서비스 | 납부계좌 |
|--|---|--|--|
| 1. 교수, 판사, 변호사, 검사, 법무관 등 개인 회원 : <u>3만원</u> 2. 법대도서관, 법률관련 기관 등 단체 회원 : <u>5만원</u> | 1. 홈페이지 가입 2. 연회비 납부 후 한국법학원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3. CMS 신청 가능: 사무국으로 문의 (02-753-6002/ ksl@lawsociety.or.kr) | 1. <저스티스> 연6회 제공: pdf 다운 가능 2. 심포지엄, 포럼 등 행사 참석 가능 (자료집 제공) | (우리은행) 052-500872-01-015 (국민은행) 815637-04-000084 (신한은행) 302-05-032394 |

☺ 한국법학원이 만드는 모든 기사·콘텐츠는 홈페이지 www.lawsociety.or.kr '뉴스레터'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